



비밀유지 계약서 (Non-Disclosure Agreement)

본 계약서는 (주) 이 고웨어 (이하"A"라 한다)와 보존(NHSN) 기계 (이하 "B"라 한다)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, 입수,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 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"A" 또는 "B"의 비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상호간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대표 또는 대리인)

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.

A: Of turb

B: 3 / 1/20)

제 3 조(비밀 정보의 정의 및 범위)

- 1. 본 계약에서 "비밀정보"라 함은 "A"가 "B"에게 제공하는 정보(전자문서, 저작물, 인쇄물,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 한다.)뿐 아니라 "B"가 "A"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(전자문서, 저작물, 인쇄물,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.)를 의미한다.
- 2. 본 계약서에 "B"가 "A"에게 제공받아 발생한 기술정보 및 기타 영업 관련정보, 그리고 "B"가 지득하게 되는 "A"의 아이디어, Know-how, 경영 및 영업 정보도 비밀 정보로 규정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.
- 3. 본 계약서에 "A"가 "B"에게 제공받아 발생한 기술정보 및 기타 영업 관련정보, 그리고 "A"가 지득하게 되는 "B"의 아이디어, Know-how, 경영 및 영업 정보도 비밀 정보로 규정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.
- 4. "A" 또는 "B"는 비밀정보가 서면 또는 유형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"비밀"임을 표시하여야 하고, 만약 구두 또는 시각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









정보제공 후 30 일 내에 정보제공일자 및 제공한 정보의 내역 등을 명시하여 그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서면으로 "A" 또는 "B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"A"의 사업장내에서 열람 또는 공유되는 정보에는 "비밀"이 표시되지 않아도 비밀정보에 속한다.

제 4 조 (비밀정보 공개 및 누설 금지)

1. "A"와 "B"는 본 계약과 관련한 비밀정보를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기간 해지 및 종료 후 에도 계속해서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, 제공할수 없으며 비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다만, 비밀정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로써 유지해야 할 정보에서 제외된다.

- 1) 서로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공공에 알려진 정보는 예외로 한다.
- 2) 비밀정보 및 사용에 대해 서로가 합의 한 경우.
- 3) 비밀정보가 행정적 또는 사법적인 소송의 판결에 의해 누설이 요구되는 경우 단. 사전에 상호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.
- 4)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
- 5)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
- 2. 서로가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상호간에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본 계약서의 목적 이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해서는 안 된다.
- 3. 비밀정보가 전자문서 또는 안화물일 경우 해당 비밀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른다.

제 5 조 (비밀정보 부정적 사용금지)

- 1.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협약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소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.

제 6조 (주의 의무 정도)

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주의 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 의무를 갖고 해당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비밀정보의 표시)

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비밀보호의무는 제 3 조에 규정한 개별적으로 기술된 구체적인 자료에 포함된 비밀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비밀정보에 한하여 적용된다.





- 1. 비밀정보 제공 당시 "대외비" 또는 "Copyright©" 또는 "ⓒCopyright" 등의 표 시로 비밀정보 또는 저작권임을 표시한 것.
- 2. 구두, 음향, 시각적 표현 등으로 인하여 제공 당시에는 비밀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, 비밀로서 취급 되어 지고 제공 후 15 일 이내에 비밀정보임을 표시하는 문서를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것.

제 8 조 (보증)

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적법하게 비밀을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.

제 9 조 (지적소유권)

본 계약 체결 전에 각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적재산권은 원래의 당사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며,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지적재산권을 허여 또는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제 10조 (자료의 반환)

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제반 자료, 장비, 서류, 기타 정보를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제공자가 부담한

제 11 조 (손해배상)

- 1. "B" 또는 "B" 의 담당자 및 종업원이 비밀사항을 제 3 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는 "A"는 민법, 형법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- 2. "A" 또는 "A"의 담당자 및 종업원이 비밀사항을 제 3 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는 "B"은 민법, 형법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- 3. "B"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, "B"는 "A"에게 손해배상액 (변호사 비용포함)을 지체 없이 지불하여야 한다.
- 4. "A"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, "A"는 "B"에게 손해배상액 (변호사 비용포함)을 지체 없이 지불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양도)

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 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한다.





제 13조 (계약의 수정)

본 계약의 수정이나 조항의 첨가는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다.

제 14 조 (관할법원)

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 등은 "A"와 "B"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하여 해결한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"A"와 "B"가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11 년 7월 13일

기업 "A": (4) 이 2위이

기업 "B":

でか(NORH)

372

대표 "A":

०१ धान्य



대표 "B":





"Minohsn.com